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5. 15(목)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4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지요?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예, 말씀하신대로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17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 최성준 위원장

- 제17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김재홍 상임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회의 때도 KBS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행인지, 하여튼 그 문제는 피해유족들이 밤새면서 KBS도 찾아갔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청와대까지 찾아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KBS에서 하던 될 것을 청와대에 가서 KBS 사장이 사죄인지 사과인지 하고, 보도책임자가 사퇴의사를 표명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봐서 알다시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유족들은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몽니를 부리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해명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또 MBC가 역시 재난방송 상황입니다만 보도책임자의 불미스러운 발언, 의혹이라고 합니다만 본인은 또 정확히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물의가 빚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방송통신정책을 포괄적으로 넓게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구로서 이 재난방송이 과연 우리 사회에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갈등을 부추기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거시적인 넓은 의미의 방송정책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KBS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방송 재허가 심의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깐 지난번 재허가 심의 때 4년인지 5년인지 기간을 줘서 2017년 말에 하는 모양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임기가 끝난 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재허가 심의 때 매우 중대한 국가 재난방송 상황에서 빚어진 일들에 대해 국민 여론층의 질타를 받았고 바로 그 피해유족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은 것을 자료화해서 분명히 넘겨주고 심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MBC인데 MBC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KBS만큼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초기에 KBS

가 불거졌고 이어서 MBC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발된 것입니다. 저는 재발방지 처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서도 방송 재허가 심사는 2017년 12월 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제4기가 될지, 그때 방송 재허가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고, 또 방송평가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방통위가 말하자면 예고함으로써 앞으로 재난방송이 좀 더 신중하게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긴급 제안하는 바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 중에 재난방송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에서 당연히 이 재난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이 당연히 재허가 당시에 허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허원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로서는 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재난방송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라고 할까, 잘못하면 또 간섭이 될 수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거나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로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래창조과학부 운영기관으로 됐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상화시킨다고 할까, 한 번 토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처럼 재난방송협의회 간부들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 간담회 같은 것을 한 번 하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넓게 우선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있는 재난방송의 정의, 그다음에 그 재난방송이 있는 경우에 방송사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느 한 내용만 우선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점검해서, 특히 재난방송의 경우에 재난상황이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재난방송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생각으로 올해 업무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과정 중의 하나로 예를 들면 재난방송을 자연재해의 경우에 재난방송의 모습과 지금과 같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구조와 수습이 주된 방송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재난방송의 내용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방송협의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재난방송협의회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또 더 나아가서 재난방송협회의 구성원이 과거에 되어 있던 구성원들이어

서 각 방송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김재홍 상임위원

-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KBS 수신료의 문제입니다. KBS 공영방송, MBC 반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저는 이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송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방송 상황에서 아주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 피해유족들의 그렇게 격렬한 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수신료를 이것을 그대로 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거듭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기 방통위에서 국회에 '방통위'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긍정적으로 했는데,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 드린 것입니다만 보도의 공정성이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재난방송의 편향성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 중대한 사정변경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서도 그 의견서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제3기 방통위가 새로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제출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는 KBS 수신료 인상은 유보다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MBC 방송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영기관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을 잘못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경영진이 재난방송 책임자들에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든지 하는 것을 해놓아야 재발방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MBC 경영기관인 방문진이나 KBS 경영기관인 이사회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처럼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일정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그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본 검토가 돼서, 어떤 법적인 근거 하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부분, 또 각 방송사와 각 통신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저희가 마치 전권을 가지고 다 개입하고 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KBS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족들이 그 공정성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번에 KBS와 관련해서 유족들이 항의방문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간 것은 방송내용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보도국장의, 모임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됐고, 그 발언에 대한 사과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은 방송과는 관계가 없는 방송국 간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KBS 자체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까지 확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음부터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여기에 반론하지 않겠고, 하나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했고 법에도 상임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안전을 제안할 때 간담회인지 티타임을 꼭 거치게 되어 있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담회, 티타임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미리 안전으로 올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긴급 안전으로 문서화되지 않더라도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회의에서는 긴급안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정말 오늘 아침에 사정이 일어나서 안전을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도저히 갖지 못했다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벌써 어제 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든지 안전으로 올려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긴급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든지 의사진행 발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 개인 소견, 또 방통위 업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관료체제에서 하는 일이지, 국회 같은 회의체나 국민 대표기관, 또는 방통위 같은 합의제 운영기관에서는 상임위원들이 문서로 준비하지 않고도 발언을 통해 안전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채택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 사안으로 제안한다' 하는 것 정도도 못 한다면 이것은 회의체가 아니지요. 이곳은 관료체제가 아니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의사를 진행할 때 어떤 형식으로 의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방통위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안전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식 안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안들을 논의해 주십시오.'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안전으로 정식으로 제안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문서로 만들지 않고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안전을 제안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요.
- **최성준 위원장**
  - 오늘은 오늘 정해진 안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정해진 안전을 모두 처리한 이후에 별도로 다음 회의 때 안전을 올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의사진행 발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안전 제안은 그냥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를 받는 것은 선의로 제가 지켜야 할 도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무슨 여기에서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것을 해야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내에서 지금 재난방송을 관장하고 있는 정책기구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재난방송협의회는 미래부가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국가재난 상황이고 갑자기 불거진 일이고, 이것을 제가 문서로 정리해서 안전으로 내라고 이렇게 사무처에 제시할 그런 여유 없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음부터는 안전 제안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긴급 사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발언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법적 근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제가….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서로 위원들 간에 발언의 양이나 수위나 내용이나 발언 기회 등이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의 많은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긴급 안건이다, 이런 것 다 좋은데 이것을 그래도 위원회에서 논의하려면 위원들 간에 오늘은 어떤 안건이 대략 논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사전에 검토도 해 보고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와서 해야 이런 합의제 기구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위원님 한 분이 이렇게 쪽 이야기해 버리면 위원회라고 서로 회의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김재홍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중 많은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만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사무처에서 그것이 우리 안건으로 논의가 될 만한 사안인지 검토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전적으로 티타임이 꼭 아니더라도 위원들 간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회의 진행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차례 긴급 안건인지, 의사진행 발언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준비된 안건도 주어진 시간 내에 논의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셔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답변을 안 할 수 없는데 상임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사무처 요원들 검증을 거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검증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 김재홍 상임위원

- 검증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사무처 요원들과 미리 이야기해서 안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 최성준 위원장

- 안건에 관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안건으로, 위원들 간에 논의하려면….

○ 김재홍 상임위원

- 사무처에 올려서 해야만 안건이 되는 것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들이 독립적·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가로막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토로하는 것인데,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그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 최성준 위원장

- 두 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 김재홍 상임위원

-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목소리 좀 높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법적 근거가 없고 우리 직무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반대로 말씀하셔야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비판했으니까 어떤 것이 근거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반대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 안건으로 논의해 달라고….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저는 근거를 다 말씀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근거가 없는, 우리 직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상당 부분을 말씀 드렸던 것 같고, 오늘 다시….

○ 김재홍 상임위원

- 오늘 발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사전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서 안전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다, 이런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의 직무범위나 근거로 정말 아주 어렵게 방송재허가 심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방송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난방송협의회의 업무소관 관장까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까 KBS 보도책임자의 실언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BS의 재난방송 전체를 전해 듣고 처음부터 편향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조작업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원인지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다는 것이 방송에 나갔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보도책임자의 실언을 통해 촉발된 것이지, 재난방송 내용 전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재난방송….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일일이 다 반론하지 않겠는데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고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논의할 것은 사전협의가 더 어렵습니다. 사무처를 거쳐서 여기에서 안전을 만들고 그것만 발언하라, 준비하라 가능하면 지키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위급상황에서 긴급안전으로 상임위원이 그냥 현장 발언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음부터는 제가 긴급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으면 발언하시는 것을, 죄송하지만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손을 들어 발언 의사를 표시함)
- 최성준 위원장
  - 예, 부위원장님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되, 그러면 발언 양을 또 말씀하시니까 국회처럼 아예 3분, 5분 시간을 따지면서 하시든가요.
- 허원제 부위원장
  - 김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해 왔고 자기 관심사항에 대해 상임위원의 문제인식에 따라 발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준을 정하시든가 하시지요. 시간을 양적으로 따지든가….
- 허원제 부위원장
  - 김 위원님, 지금 제가 발언권을 받았는데 김 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아니요, 발언권은 사회자가 주는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았는데….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은 이기주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부위원장님께 발언권 드렸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오늘 김 위원께서 그렇게 안전을 제의하신 것인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인지 그것이 사실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 안전 제의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사전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토론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안전으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고, 또 그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 위원 한 분께서 그냥 갑자기 발의해서 여기에서 논의가 될 수도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의견들은 얼마든지 미리 우리 위원들 간에 사전에 공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를 지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의사진행 발언만 해도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이 김 위원께서도 의정생활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모든 발언의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절차상에 있어서 긴급하게 뭔가 사전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일 때 의사진행 발언의 우선권을 우리가 주는 것인데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안을 제의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 간에 공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스터디(study)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난방송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우리가 재난방송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상파방송사 62개사에 통지가 내려가면 KBS는 자동적으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이 되고, 또 법에 의해서 공동취재단을,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구성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난방송을 함으로 해서 예방적인 측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상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으로써 예방적 그리고 사후복구적 이런 것이 꼭 필요할 때에는 방송을 강제시키는 것이 재난방송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자연재해든 사회적인 재난이든 국가가 그런 것을 지정하지 않아도 언론사 자체적으로 그것은 보도의 기능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또 방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KBS가 주관방송사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각 언론사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분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도 그것은 우리가 대충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미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방통위로 주관을 옮기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고, 또 재난방송의 결과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것, 지금 당연히 재허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이번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위중하기 때문에 배점을 좀 더 올려서 평가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분하게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의제를 발제해 주셔야 우리 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 김재홍 상임위원

- 하나만 답변 겸해서 말씀 드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전에 준비해서 의안을 만드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전준비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다 사장되고 배제되기 때문에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회의에서 KBS가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KBS는 법적으로 상시적인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입니다. 지금도 KBS가 법적으로 이 재난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절차를 밟아서 지정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재난방송이냐, 아니냐, 이것은 각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시에서 8시 뉴스의 재난방송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하는 비능률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재난방송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책임 방송사는 KBS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상당히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재난방송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도 재난방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40조에서 말하고 있는 재난방송은 이러이러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이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각 방송사가 하고 있는 방송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해당하는 재난방송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이 제40조에 의한 재난방송이 아니라면 현재는 KBS가 재난방송 주관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가 말하고 있는 재난방송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KBS가 주관방송사로 자동적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 **김재홍 상임위원**

- 세월호 침몰사고가 제40조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수백 명의 인명이 희생된...

○ **최성준 위원장**

- 침몰사고가 아니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이냐는 것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와 수백 명의 국민이 희생된 이 사고가 재난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취재, 보도하는 방송이 재난방송이냐 아니냐, 이것을 그러면 사후에 법 해석에 의해서 갈음해야 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난방송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재난방송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는 방송을 일반인들이 보통 재난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해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물론 2일 전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안건의 경우 예를 들어 긴급한 안건이라고 하시면 어제 오후든지 또는 오늘 아침에든지 얼마든지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안건이 제시되면 다 정리가 되어서 안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안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건이 제시가 되면 원래 원칙은 심의·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해서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안건이라면 예를 들어 오늘 회의하기 전에, 9시에 어떤 안건을 제안하셨다면 그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목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설사 서면으로 작성할 시간이 없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오늘 10시에 안건으로 이런 것이 긴급 상정됩니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절차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가능하면 지키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3:1 구조에서 소수자로서 회의에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긴급 사안일 경우에….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안건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안건을 상정하겠다는데….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회의를 많이 해 보지 않았습시다만 분위기상 저의 문제의식과 다른 여권 위원 세 분의….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안건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안건을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여기에서 구두로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안건을 말씀하시면 그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옛날 이야기, 옛날도 아니고 최근에 말씀을, 지나간 일을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권 추천 세 분 위원들만이 전체회의를 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안건을 토의·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다 통지가 됐는데 참석을 안 하신 것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하겠다고 이미 통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의결하면 안 된다.”고 이미 다 공개적으로 밝혔고 통보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 소수자의 대처방법은 따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보기에….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완전히…, 아니, 제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완전히 그냥 무질서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양식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제 관심사, 문제의식과 아주 거리가 멀고, 또 하나는 긴급 사안일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 와서 발언을 통해 하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과 다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도저히 그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라도 안전으로 제안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음부터는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하면 사회권이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 최성준 위원장

-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상임위원의 권리를 다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권한과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의 사회권을 행사하시되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까지 처음부터 합의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야당 추천 위원이 1명 안 들어와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혼자인 야당추천 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국회에서 말씀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사전에 상의하고 충분히 정상적으로 해서 안건을 준비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안건을 상의를 해서 하자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건을 제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준비해서 하는 절차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안해 드리면...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준비해서 할 것은 하겠고, 시간이 되면 하겠는데 긴급사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상임위원의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인정 여부를 말씀 드렸고, 더 이상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 김재홍 상임위원

- 처음부터 양식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상의할 만한 분위기고 어느 정도 합의제 운영기관의 원칙을 지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렇게 안 하지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몇 차례 회의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법 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여기 계신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합의제 정신의 무엇을 여기면서 진행했는지 저로서 참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반복되니까 오늘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개 안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2014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과 미래부 소관 방송사업자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징수율 결정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 이미 징수를 완료했으므로 징수 대상에서 이번에는 제외합니다. 둘째,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에는 징수율에 대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제1안>은 현행 징수율, 즉 0%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아래 <표> 종합편성과 보도PP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 초기로 사업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또한 과거 신규진입에 따른 해당 사업군이 적자일 때 분담금을 면제하고 있던 과거 사례를 고려했습니다. 다음에는 <제2안>입니다. <제2안은> 종편과 보도PP사업자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징수는 하되, 징수율은 최초의 징수율 사례를 고려해서 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시 개정 사항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등입니다. 우선 미래부 소관 종합유선, 위성방송, 홈쇼핑 방송사업자, 그리고 IPTV 사업자에 관련된 고시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조문들은 고시에 대한 조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으로 고시 조문이 상향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고시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에 고시 개정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징수율 제도개선 합동 공동반을 운영해서 먼저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담금 면제 감면기준을 재검토하고, 종편이나 보도PP, 지상파는 6% 범위 내에서 사업자별로 합리적인 징수율 결정 기준을 마련하고 끝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징수율 결정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5항이 분담금의 면제나 경감이나 징수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0%로 한다는 것과 분담금을 면제, 그리고 또 경감한다는 개념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재정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경감은 시행령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무상 결손금이 많은 경우 경감해 줍니다. 다만, 면제사항과 징수율 0%는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법률에 있는 규정과 시행령의 내용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분담금을 사업자별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운영해 온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으로서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또 과거의 정책결정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건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이 서로 부합되는 정도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에 보면 분명히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과거부터 분담금을 징수율 0%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적용해 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 계획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법률과 시행령과 과거의 방통위 정책결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정책대안을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많이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법률도 개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우선 딱 보서는 시행령과 실제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됐든 이번 기회에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미래부와 어차피 합동작업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깐 같이 작업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여러 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그 정책대안과 현재 시행령과 차이가 있다면 어쨌든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해야 하지만 미래부도 지금 분담금 문제를 정해야 하는 사업자가 어디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위성방송, SO, 홈쇼핑, IPTV사업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와 같은 타이밍 상으로 정해야 할 것이 어느 사업자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4개 다 정했지만 현재 미래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서 행정예고 중입니다. IPTV는 안건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14년을 동일하게 적자라는 이유로 징수율 0%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쨌든 미래부와도 서로 정책방안을 일치시켜야 할 것 같고, 여하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종합적으로 업체들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우선 오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그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토론할 시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또 기재부 심의를 거치려면 우리가 언제까지 결정해야 금년 징수에 유효합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6월 말까지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통위가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6월 말까지 고시 개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다른 정부 부처를 거치면...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거치기 전에 보면 지금도 상당히 늦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징수율을 변경하면 기재부에 기본적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당연히 행정예고도 거쳐야 돼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도 상당히 촉박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오늘은 사무처에서 마련한 <제1안>, <제2안>이 있는데 좀 단순화시킨다고 할까, 이야기하면 적자를 내고 있는 방송사들에 대해 계속 면제해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논거가 있기 때문에 징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하고 가능하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늦어져서 실효하면 우리 책임이니깐요. 그러면 <제1안>,

<제2안>을 놓고 토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면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 국회의원일 때에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일종의 전파사용료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대신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를 내거나 고가로 매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는 공공성 같은 것 때문에 따로 내지 않고 방송발전기금을 내서 대신하는 것이지요. 그때도 정부 일각에서는 전파사용료를 내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방송위원회와 국회에서 그것은 이중과세라고 안 된다, 방송발전기금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것을 경영이 적자이기 때문에 안 낸다면 전파를 무료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파관리, 방송정책을 수행하는데 국민들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방송사들은 적자를 이유로 계속 아무것도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사용료도 안 내고,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안 내고, 다른 통신사업자들이나 국민들은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정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성격이지, 영업이익을 내면 기금을 내고, 영업이익이 안 나면 안 내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파트 거주자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낸다 하는 것과 같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파를 이용하는 사업을 하면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방법과 절차도 보면 영업하고 1년 연말 쫓 결산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내는 영업세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파를 이용해서 광고를 수주하기 때문에 광고 수수액에 비례해서 부과세를 걷어서 원천징수해서 국세로 내고,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원천징수하는 것처럼 해서 건네주는 것입니다. KBS와 MBC도 방송광고공사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편을 비롯한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광고대행사 미디어랩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디어랩에서 전파를 이용해서 수주한 광고에 부가세 내고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도 거기에서 원천징수처럼 걷어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경영결과 내고 안 내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사들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사회적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 전파와 방송정책을 관리하는 비용을 전부 국민 세금과 일부 통신사업자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적자폭에 따라서는 징수율을 조정할 수는 있으되 징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사업 할 때 1년, 2년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적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는 것도 사실은 법적 시행령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행정사무로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계와 방송가와 또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 시비 논란을 벌이면서 방송사업, 방송언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징수율 최저는 1.33%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 1.33% 이상으로 상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하면 돈도 많지 않더라고요. 사별로 1억원에서 5~6억원 사이입니다. 그런 정도로 부담금을 내고 해야 몇몇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2안> 플러스 알파(Plus alpha)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먼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보면 다음 항목의 사업자, 해당 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하는 이 조항에 지금 종편과 보도PP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안 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동안 징수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다른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우에 우리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위 전파를 바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 연도부터 이 분담금을 바로 납부한 것이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지상파방송사업자, 물론 지상파 DMB는 제외하고...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것은 계속 면제 상태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그 나머지 플랫폼사업자 중에 SO는 2년간인데 SO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 '95년 이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95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것이 미비가 되어 있던 상태 같습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상파에만 분담금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SO 부분에 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징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부위원장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SO의 경우 실제로 사업은 '90년대에 했지만 이 분담금 의무대상으로 들어온 것은 2000년도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래서 '95년, '96년 해서 쪽 하면 6년, 그리고 2001년, 2002년 하면 8년간 사실상 분담금을 면제해 준 상황입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위성방송도 법정 면제 3년, 그리고 그 뒤에 또 3년 해서 6년간 면제했고, 그리고 IPTV가 6년간 면제가 됐고, 지상파DMB는 아까처럼 9년째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담금 할 때에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예측 가능해야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특히 또 지금 종합편성PP와 보도PP가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전체 누계를 보면 2011년~2013년까지 한 5,0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타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올해 3년차 들어가는 것이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3년차에 징수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편과 보도PP는 지상파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의 사업의 규모와 종편과 보도PP 사업의 규모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 관해서 볼 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징수율을 올해 3년차는 그동안과 같이 0%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일단 이 징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절차 부분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해서 개선해 보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시행령 조항을 보시면 면제나 경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정해 놓았다든지, 몇 퍼센트를 경감한다는 것이 재량 없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초기사업 적자로 어렵게 했던 부분들은, 시행령 제12조를 보시면 범위 사항은 정해 놓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다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방식이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내년도에 얼마를 낼까, 내후년에 얼마를 낼까 예측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원하는 것은 방송사업자가 '올해 내가 얼마를 걸으면 내년에 분담금을 얼마 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식의 개선방향을 미래부와 같이 해서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됐던 것처럼 시행령상의 면제, 또 경감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보고내용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면제, 경감기준을 시행령 및 저희 고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6% 범위 내에서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업자별로도 어떤 징수율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같이 기준을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결국에는 재정상태와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상한 범위 내에서 징수율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에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른 사업자들의 형평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편PP 또 보도PP가 전파를 사용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 고낙준 재정팀장

-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지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일부 적자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합편성이나 보도PP의 경우 유료방송으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전파를 바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는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플랫폼사업자들과 그 형평을 논해야 하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적자인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한 3년은 징수하지 않았던 것이 종전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편과 보도PP의 경우에도 같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예를 들어서 같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IPTV와 비교해 볼 경우에도 IPTV의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기간이 훨씬 더 짧은 종편의 경우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징수를 한다는 것은 그런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예측가능성 측면까지 고려해 볼 경우에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돼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1안>으로 징수율을 0%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위원장님과 이기주 위원의 의견은 <제1안>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재홍 위원의 의견은 <제2안>, 또는 <제2안>보다 비율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고안건이고, 그러면….

○ 김재홍 상임위원

- 좀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토론 원하시면 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선 전파사용료를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IPTV는 전파보다는 인터넷이지요.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종편은 IPTV에 비교해서 전파매체입니까, 전파가 아닌 매체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P는 전송방식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을 통해서 릴레이(relay) 하느냐, 다른 지상파를 통해서 릴레이(relay)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파 여부가 결정되는데, 종편은 전파와는 관계가 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파사용료조로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저희가 주파수를 직접 지정해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PP들도 다 마찬가지로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주파수를 가지고 하는..., 그러나 PP들도 간접적으로나 자기 전송을 위탁할 때 다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전파사용료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전파사용료의 부담 주체는 무선국 개설을 허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해서 방송신호를 보내는 개념이 아니고, 전파법에서 이야기하는 무선국을 실제로 무선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 전파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이 법을 다시



한 번 보니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와 전파사용료의 용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파사용료는 많은 사람들이 전파를 이용함에 있어서 혼신을 없게 하고, 불법 무선국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이나 방송콘텐츠의 육성 지원 등 이런 굉장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진흥을 위한 그런 용도라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 매체별로 주파수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논의보다도 무선국을 자기가 개설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전파사용에 대해서는 협의의 개념이 있고 광의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스터디한 바에 따르면 케이블은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주파수와는 관련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케이블도 자기들이 설치한 케이블이 있지만 그 내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유사 전파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예측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때, 행정을 펼 때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광고 수주 대비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 자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수주하면 어느 정도 국가에 내는 부가세가 5%인지 10%인지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발기금도 마찬가지지요. 1.3%인지 2%인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광고를 수주하면 몇 퍼센트 내는구나 하고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 지금 적자인 방송사에서 방통기금을 하나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일부 지상파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부인데 형평성 문제를 정말 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따지려면 제대로 하든가, 적자인 방송사들도 내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다음에 시행령상 또는 법상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개정 개선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많은 국민 여론층이 특혜로 비판해 오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종편을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 저는 종편을 특정해서만 말하지 않았습시다만 다들 그것으로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국민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내용들을 가능하면 밖으로 다 공개하고 알려서 언론계와 방송가와 정치권과 국민 여론층에 알려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때 그 과정에서 피드백(feedback)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결정권

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해 놓고 잘못 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준비기간이, 준비과정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한 열흘 이상 그것은 토론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내부에서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사회 내 여론층의 반응을 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내부에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분 더 논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한마디만 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분담금 문제가 우리가 주과수를 사용할 때 사실은 이것이 제한된 주과수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희소자원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독과점적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매제를 해서 추가적인 이윤을 사전적으로 정부가 받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경매제 자체도 지나치게 과대경쟁을 유발해서 그것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 중간적인 단계로 이런 부담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우리 정부가 받아내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독점적 이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종편과 보도PP의 경우 이것이 특정한 주과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단지 이것이 허가사항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5,000억 원이 넘는 누적적인 적자라는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예측 가능성 문제도 그렇고, 또 이 부분을 현재 지상파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 전파를 바로 직접 사용하는 지상파와 PP와 직접적으로 대비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이 보고안건인데 지금 <제1안>, <제2안>으로 해서 어느 안이 좋겠느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특이한....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특이한 구조인데, 고시 개정을 통해 저희가 결정해야 하는데 고시 개정을 하려면 기금을 종합 관리하는 기재부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규제개혁 심사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안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1안>, <제2안>으로 해 놓고 나중에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한 것을 전제로 일종의 잠정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은 이렇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 끝나면...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야기해 보십시오.

○ 고낙준 재정팀장

- 보고안건으로 정해져서 단일안으로 보통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서...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지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분담금 징수 현황해서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던 것이 2주 전입니까, 3주 전입니까?

○ 고낙준 재정팀장

- 한 달 전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때 제가 일찍 봤을 때 고시 형태로 정책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 이런 것을 토대로 종합적인 현황 보고를 했고, 저 나름대로는 이후 부터는 계속 법조문도 들여다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더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동안 나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저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해서 특별히 더 검토할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접수하는, 보고안건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위원회 의사 결정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래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의결사항으로 또 한 번 우리가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제1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1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러 가지 현행 법 조문과 그간의 정책결정 사항을 봤을 때 불가피하게 이번에 <제1안>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더 논의하는 방

법도 있지만 제가 장황하게 앞으로의 절차를 말씀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환이 될 기회도 있어서 저는 가급적 오늘 저희의 안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안건의 경우에 두 가지 안이 있으면 그 안 중에 어느 한 안을 접수해서 그 이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예고라든지 다른 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납부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6월 30일 이전에 저희가 고시 개정을 의결해야 하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만약에 6월 30일까지 고시가 개정되지 않으면 종전 고시대로 0%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지요?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고안건이고 그다음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최종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안건을 접수하는 형식으로 각 의견을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느 의견이십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는 <제1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상임위원

- 바로 그 점인데 일종의 여기에서 준결정 같은 것인데 기재부나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할 때 방통위 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협의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뒤집는 예도 있겠지요. 수정하거나,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가 공식 의견은 아니겠지만 협의부처로 가지고 갈 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두고 토론도 하고 여론층의 반영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1안>을 가지고 협의하느냐, <제2안> 협의하느냐 그것은 준결정이지요. 그것은 아직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합의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저희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 네 분의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계속 결정을 못 하고, 저희 내부의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끌 경우에는 그 시기를 놓쳐서 작년 고시대로 그대로 가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연하게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최종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을 앞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정해놓는 것이어서 오늘 그것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징수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사실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오늘 꼭 해야 하느냐, 일주일 뒤에 할 수 있느냐, 일주일 뒤에 해서 정부 협의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좀 더 토론도 필요하고 바깥의 여론도 우리가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종 의견이 아니라고 하지만 방통위의 의견을 하나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다음 주 중에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해서 그때는 정해서 저희 방통위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도 시간적으로 괜찮습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일단 촉박한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왔다 갔다 더 해서...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일단 접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 다시 재상정해서, 다만 지금 일주일 연기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만약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다수의견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이 안건은 접수를 보류하겠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방통위에 불법보조금 시정명령 불이행시 제재와 관련해서 시정명령 금지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제재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1일당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사업정지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완화된 대체수단으로 과징금이 적은 사건 또는 작위명령 위반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 개정안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입니다. 현재 알선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실질적인 통신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므로 중립

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지난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쟁조정·심사 관련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토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회에 보고된 후에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4년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막 말씀하신 알선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하는 제46조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까? 결국에는 알선분과위원으로서 그 알선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그 취지를 보면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이 조항을 보니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무조건 공무원으로 본다, 그래서 마치 모든 업무에서 다 공무원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특히 형벌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 수식어를 집어넣어서 '알선분과위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다른 위원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개정안에 예를 들면 분과위원으로 선정해 놓고 분쟁조정 건이 들어올 때 실제로 검토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간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알선 내지는 조정하는 기간 동안 내지는 그 업무를 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시정명령을 어긴 경우에 사업중지명령을 미래부가 할 수 있던 것을 방통위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이것은 미래부와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협의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이행강제금 문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처럼 보이는데 하루당 1,000만 원 이하가 적절합니까?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으로 봐서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예상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효과적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최근에 사업정지로 인해서 오는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고려할 때에는 사업정지보다는 금액이 작다는 말씀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효과적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과징금액이 적은 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과징금 부담이 많을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충적인 제재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단지 법률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인데 지금 단말기유통 개선법이 10월 1일 시행이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빨리 정부 내 협의, 심사를 받고 국회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이것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물론 이행강제금을 두는 것과 그다음에 어느 경우에 주로 이행강제금을 적용할지 예상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사업정지 같이 굉장히 중한 경우에 대체수단으로 쓰려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일 1,000만 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정지까지 가지 않을 위반행위,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 작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정지하는 것이 아주 과하고, 다른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쓴다는 의미라면 1,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오해가 없도록 정리해서 나중에 법안을 만들 때에도 이것이 주로 이룬데 활용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정지해서 1일 1,000만 원은 이동통신3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강제성이 있는 금액이 되겠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정도의 것은 이렇게 사업정지를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들에게 규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업정지, 사업정지가 있고, 하나는 이행강제금, 과징금이 있는데, 이것이 재벌그룹이기 때문에 웬만한 과징금을 물려도 꿈쩍 안 하지요.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키면 영똥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전국에 5만이 넘는 대리점·판매점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인데 저는 웬만하면 이통사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에게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도, 왜냐하면 영똥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 이행강제금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영업정지시키지 않고 금지행위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주로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최근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1,000억원이 넘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1일당 1,000만 원 하면 365일 해도 36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다른 이행강제금 조항, 다른 법에 있는 조항을 참조해서 설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다른 법에서 보면 3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많습니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법 사례 중에 적당히 1,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런 사업정지에 갈음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경우라는 것이 대상사업자의 규모도 있지만 또 위반행위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사업정지와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대한 큰 사업자들의 문제는 벌을 주기 위해 사업정지를 하는 것이고, 또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정지에 해당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통해 선택적으로 위원회가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대체로 상식의 선에서 봤을 때 첫 반응이 사실상 이행강제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위를 조금 넓혀 놓는 것이 현재까지 과징금의 규모에 비해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때에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책정하면 되는데, 처음에 상한선을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해 놓으면 실질적인 제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잘못하면 사문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아까 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단통법 시행되기 전까지를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렇게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이행 안 될 때 1,000만 원이든 금액을 더 높여서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려면 집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시정명령이 불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은 저희가 매일매일 조사를 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사업정지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눈으로 확연히 보일 수 있는 것, 시정명령이 뭐가 내려갔는데 그것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가 눈으로 확연히 보일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위반내용이 중하지 않은 것들의 가능성이 많아보이는 합니다. 그런 점 등을 잘 고려하고 검토해서 이리이러한데 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에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얼마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은 상한을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논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의견을 드리면 입법예고부터 하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매우 많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개정안 초안을 처음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아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공무원 의제조항,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의견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용자정책국에서 앞으로

입법예고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최종안을 만들 때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빨리 의견 협의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저희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하니까 오늘 이 안 자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안전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에 통과되어서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인데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안 제4조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 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합니다. 세 번째는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입니다.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중지명령의 세부 적용대상, 세부 적용기간, 불복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안 제6조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명령 관련 기준입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입니다. 위반행위의 중지,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징금 관련 기준입니다. 안 제11조~제16조까지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18조입니다.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위원회 보고가 끝나면 입법예고, 관계 부처협의, 규제위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이전에 시

행령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되, 시행령 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되고 배부가 돼서 알고 계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일정이 아주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부분 위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히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기 방통위 출범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위원님들이 다루었던 것이 보조금 문제 같은데, 보조금 동향에 대해서 보고 안전으로도 다뤘고, 또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만나질 동안 검토와 토론도 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번에 다소 낮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부, 방통위 또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이런 법적 틀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잘 시행하느냐가 방통위에 주어진 임무, 숙제 같은데, 이 시행령안에 고시로 다시 위임해서 제정하려는 것이,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몇 건 정도 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6건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시행령안 만드는 작업도 참 힘든 작업인데, 시행령이 다 통과된 10월 1일 이후에 고시를 만들 생각은 아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시행령안과 고시안을 동시에 작업해서 부처 협의 과정이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올려야 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효율적인 준비작업을 해야 10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가 자료 제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 분기별로 분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는 매월 그다음 날 15일까지 이렇게 한 것을 여러 부담이 된다고 해서 분기별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협의과정에서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 제조업

체 부담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매 분기 15일 이후 이러면 분기 중에 세 번째 달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월 것을 그다음 달 말일까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동향을 잘 팔로우업(follow-up)하고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툴(tool)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하면 종전의 원래 안은 '매월 종료 후 15일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촉박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서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로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매월 종료 후 30일 이내' 이렇게 하면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그러면서 저희도 효과적으로 시장을 파악하고….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좋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 나와 있는 안처럼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위원회에서 검토하시면 되니까 수정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매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부위원장님과 김재홍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매월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미래부에서 제조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와 같이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해서 의견이 일치됐다는 것을 전제로 미래부와 협의해 주시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볼 때 다시 미래부가 그런 의견이 강하면 제조업체가 다시 그런 의견을 내면, 입법예고가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통사와 제조업체 두 대상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관할이 제조업체 자료제출은 미래부로 잡니까? 우리와 같이 오게 되어 있지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공동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논리적으로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원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받는 것이 의견수렴인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수정해서 내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조업체가 그것을 입법예고 시 의견을 내면 저희가 다시 위원회에서 수용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게 하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부터 비공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14-18-058) (비공개)

## 8. 기 타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5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9. 폐 회

###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폐회】